##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05

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이용우・박선원・이원택

박홍배 • 전진숙 • 정혜경

김태선 · 김 윤 · 장철민

박용갑 · 김우영 · 이학영

임미애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해 12월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 령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양심고백으로 윤대통령이 국회 기능 마비를 꾀한 정황이 드러났음.

현행법은 내란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이 위법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해당 위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「형법」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, 「계엄법」위반 행위 또한 마찬가지임.

이에, 내란죄 등「형법」 및 「계엄법」을 위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 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30호의2 및 제47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0의2. 「계엄법」

477의2. 「형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